** 준법감시인 심의필, 심의번호: 2015-C-686 (심의일: 2015.11.17)**

**퇴직연금전용정기예금 상품설명서**

|  |
| --- |
|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퇴직연금 전용 정기예금 특약)이 적용**됩니다.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통장 또는 증서 등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 |

1. **상품개요 및 특징**

￭ 상품명: 퇴직연금전용정기예금

￭ 상품특징: 퇴직연금 가입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정기예금

1. **거래조건** (2015. 11. 23 현재, 이율은 세전, 연% 기준)

|  |  |
| --- | --- |
| **구 분** | **내 용** |
| **가입대상** | 퇴직연금사업자(자산관리기관) |
| **저축금액** | 제한없음 |
| **계약기간** |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
| **이자지급방식** | 만기일시지급식 |
| **이 율** | (단위: 연, %, 세전)   |  |  | | --- | --- | | 계약기간 | 확정급여형(DB형) / 확정기여형(DC형/IRA형) | | 3개월 | 1.53 | | 6개월 | 1.59 | | 1년 | 1.75 | | 2년 | 1.83 | | 3년 | 1.87 |   상기이율은 2015.11.1~2015.11.30 까지 적용 가능한 이율입니다.  위 기간 이후 금리는 시장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중도해지** | |  |  | | --- | --- | | 예치기간 | 이 율 | | 1 개월 미만 | 0.1% | | 1 개월 이상 | 기본이율 X 50% X 경과월수 / 계약월수  (단, 최저금리는 0.1%) |   1) 경과월수: 입금일로부터 해지전일까지 월수로하고, 1개월 미만은 절상,  단, 경과월수는 계약월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계약월수: 입금일로부터 만기일까지 월수로 하고, 1개월 미만은 절사,  단, 계약기간이 월단위인 경우 계약월수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
| **특별중도해지** | ▶특별중도해지이율  다음의 사유에 의해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신규일(재예치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해 경과기간별 약정이율을 적용합니다. 단, 특별중도해지 사유 (자), (차)의 경우에는 약정이율을 적용한다.  ▶특별중도해지 사유   |  | | --- | | 가. 퇴직, 연금지급 등 급여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인 경우  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 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③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④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다.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라.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마. 수탁자의 사임  바. 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사. 개인형 개인퇴직계좌의 법정요건에 따른 특별 중도인출의 경우  아. 퇴직연금제도의 동일사업자 내의 제도전환 및 급여이전  자.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한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에 의한 운용관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차.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한 퇴직연금 자산관리계약에 의한 자산관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   ▶**경과기간별 약정이율은 신규일 또는 재예치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  |  | | --- | --- | | **기간** | **적용이율** | | **6개월 미만** | **3개월제 이율** |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6개월제 이율** | | **1년 이상 2년 미만** | **1년제 이율** | | **2년 이상 3년 미만** | **2년제 이율** | |
| **분할해지** | 1) 만기해지 포함 3 회까지 분할해지 가능하며,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 상품의 경우에는 가입자별로 3회까지 분할해지 가능합니다.  2) 퇴직급여를 연금 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인출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인출의 경우 분할해지 횟수에서 제합니다. |
| **자동재예치** | 1) 퇴직연금 전용 정기예금 만기 시, 신규일 또는 계약기간 중 거래처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최초 계약기간」 단위로 자동 재예치합니다.  2) 최초 신규 시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을 위한 운용지시서 상에 자동재예치를 선택 할 경우에는 이후 별도의 자동재예치 신청 생략 가능합니다.  3) 재예치 시에는 재예치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약정이율을 적용합니다. |
| **기타사항** | 1) 추가 우대금리 및 만기후 금리는 없습니다.  2) 질권설정, 담보제공, 지급정지, 상계 등이 불가하며, 통장 미발급 합니다.  3)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합니다. |
| **예금자 보호** | |  |  | | --- | --- | | 확정급여형(DB)에 운용되는 정기예금 |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확정기여형(DC) 또는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운용되는 정기예금 |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

상품가입 후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 (1600-8585),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고객만족센터 (080-590-8282)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www.knbank.co.kr](http://www.knbank.co.kr)**)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